

SI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계 경 문*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SI Contract

Kyoung Moon Kye*

■ Abstract ■

The rapid growth of Korean SI (System Integration) industries have established the largest marketplaces in Korea.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SI industry, SI contract between developer and outsourcer is very much important. SI contract have the specific legal characters of undertaking, trust, mandate and etc. However, this paper attempts to establish the particular legal system of SI contract.

Keyword : SI Contract, Legal Character

1. 서 론

SI 사업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와 주변기기, 각종 소프트웨어와 통신망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요원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확보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시스템과 관련 요원 등을 하나로 결합하여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책임있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SI 사업은 과거의 “업무전산화”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대형프로젝트의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고, SI 사업의 주고객이 정부기관중심이었던 때 문에 SI 계약에 관한 논의도 주로 현행 공공부분의 일반적인 사업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의 유형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부의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고객이 민간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변호사

기업이나 단체, 학교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경우 SI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SI 계약은 기존의 계약과는 달리 고객의 시스템적 요구를 계약의 중심으로 하므로 기존의 재화 중심의 전통적 계약의 해석과 적용으로는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일단 SI 계약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도급계약의 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현행 민법상의 도급계약은 수공업자에 의한 주문생산 내지 고객생산이 지배적이었던 중세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664조), SI 사업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SI 계약의 법적 성격을 일의적으로 규정짓기에는 우리가 따르므로 새로운 법리의 발전과 함께 SI 계약단계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즉, SI 사업은 첫째 고객요구사항이 사업수행시 작단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사업수행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구체화되는 특징이 있다. 둘째 계약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고객요구사항이 확정적이지 못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약문서를 명확화하기 어렵고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검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납기의 지연과 가격의 반영이라는 문제, 그리고 사후정산의 어려움이 많으며 불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인하여 사업대가를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²⁾.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SI 계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과 아울러 본 고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주한 SI 계약 체결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본다.

2. SI 계약의 법적 성격

2.1 도급 계약의 법리

우선 우리 민법은 계약의 유형으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형계약(典型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 전형계약(非典型契約)으로 나누고 있다. 비 전형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것인데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형식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SI 계약의 도급 계약적 요소를 살펴본다.

① SI 계약은 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에서 도급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SI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 일의 [완성]은, 노무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급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일의 완성과 보수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 즉 도급인, 즉 발주자는 완성된 결과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³⁾. 마찬가지로 SI 계약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시스템과 관련 요원 등을 하나로 결합하여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책임 있게 제공함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약정된 금액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겠다.

②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민법 제667조 내지 제672조), 이는 민법상 매매의 법리에서 발달한 책임의 유

1) 한국전산원, 「SI 사업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1998, pp.7

2) 김현수, “SI 프로젝트 계약 및 수행 개선 이슈 분석, 「한국SI학회지」, 제2권, 제1호(2003), pp.37.

3) 박윤직, 「채권각론」, 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pp.302.

형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에게 흠이 없는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 또는 이에 응하여야 할 매도인의 책임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외에 도급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도급인은(SI 계약의 경우 발주자를 의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SI 계약의 경우 수주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의 보수 대신에 또는 병행하여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또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도급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68조).

그런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의 내용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때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민법 제669조).

SI 계약에서도 그 일의 완성 또는 중간단계에서 그 시스템을 검수하여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하자가 도저히 시스템자체를 운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상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면 수주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나 대개는 수주자가 시스템 전문

가 일 것이므로 위 발주자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지적하여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주자는 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하자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객관적으로 그 하자를 판정할 검수기관이 절실하다. 같은 맥락에서 수급인은 도급계약 당시 도급인과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별도의 특약을 하였어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민법 제672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발생에 있어 수급인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어 있다⁴⁾. 즉, 도급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 즉 하자 없는 완전한 일을 하는 것이 수급인의 책무이므로, 그의 책임은 하자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SI 계약에 있어서도 수주자는 당초의 계약대로 완전한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불가항력이라든가 책임의 범위를 논할 일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수급인이 일의 착수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제545조, 제673조). SI 계약은 그 성질상 일의 착수가 늦어지거나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시스템을 완성 후 이를 발주자에게 넘겨 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발주자는 SI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지 계약해제의 방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를 계약해제도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청산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주자는 수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4) 대법원 1980. 11.11 [80다 923·924]

④ 수급인, 즉 SI 계약의 수주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일을 하여야하나, 도급인은 특약이 없더라도 수급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SI 계약은 대개 하도급을 주는 일이 많은데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수주자가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때 제3자로 하여금 독립해서 일의 전부나 일부를 완성케 하는 경우를 하도급이라 한다. 이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주자는 책임을 저야 한다(민법 제391조).

이 밖에도 도급인과 수급인사이의 위험부담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SI 계약의 “도급계약적 성질”을 논하고 있는 만큼 민법의 쌍무계약의 법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외에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의 규정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도급계약의 특성을 본다면 SI 계약도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2 SI 계약의 고유한 특징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SI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인 도급계약의 법리로만 규율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있어서 SI 계약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2.2.1 계속적 계약의 성격⁵⁾

SI 계약은 위에서 밝힌 도급계약의 성격 외에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특성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서 청약이나 계약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유형을 특

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계약의 유형은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과 대비되어 있는데 우선, 일시적 계약이란 「어떤 시점에서」행하여지는 것으로 계약의 이행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적 계약은 그 이행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표준을 정한다.

강학상 논의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 중 SI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반복적·정기적으로 파생하는 개별적 채권과, 이를 파생케하는 기본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바 예컨대 SI 계약에 있어서 수주자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시스템개발을 비롯하여 H/W 설치, S/W 설치, 부대설비와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의 개별 계약 또는 채무가 있고 이를 파생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해지권이 있게 된다. 해지제도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징을 이루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채권관계에 있어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오직 계속적 계약관계뿐이다. 이 「해지」는 「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지만(민법 제550조),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할 뿐이다.

셋째로, 계속적 계약관계는 상당히 긴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중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처음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합의아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상호신뢰성이 증시된다는가 더불어 당사자사이의 경제적 힘의 차등으로 명령·복종의 지배관계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 등도 지적된다.

2.2.2 SI 계약의 고유한 특징

즉, SI 사업은 첫째, 고객요구사항이 사업수행시작단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사업수행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

5) 이하는 대부분 판윤직, 전계서, 34면 이하에서 전제하였음.

특징이 있다. 그러한 요구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도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거나 각종 부속서류로 명시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계약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특징이 되더라도 막연히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만 표시되는 사례도 있다. 고객요구사항이 확정적이지 못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약문서를 명확화하기 어렵고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검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지체상금을 처리하기도 어려우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도 발생한다.

셋째,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납기의 지연과 가격의 반영이라는 문제, 그리고 사후정산의 어려움이 많으며 불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인하여 사업 댓가를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넷째, 고도의 기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 등의 판정의 기준과 그 주체를 정하기 어렵고 계약 이해상의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그 비용과 시간상의 문제로 계약당사자 모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쟁을 명확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2.3 SI 계약의 실제사례

논자는 최근에 “A” 대학(이하 A)과 “B” 기업(이하 B)간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약서를 손질해 본 기회가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SI 업체가 우리나라에 시스템을 판매 또는 구축하는 대리점과의 공급계약도 손질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논함과 아울러 실제 계약에 있어서 몇 가지 계약의 특징을 논하면서 위 SI 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항상 분쟁을 염두에 두고 SI 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법적인 소송까지 벌어질 경우를 예상한 계약서이어야⁶⁾ 상대

방의 성의를 기대하는 계약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3.1 계약당사자의 문제

위 A와 B간에는 “고객” 서울시 00구 00동 A대학교 총장 000/“0000회사” 서울시 00구 00동 (주)대표이사 00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대학교는 교육시설에 불과하지 민법상의 계약주체(민법상 당사자 능력이라고 함)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학교법인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상 이러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대학교에서 SI 계약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그것도 기각 아닌 소 각하⁷⁾)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것은 대학교 총장은 SI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2.3.2 계약기간의 문제

“대개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하고도”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A와 B는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A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언제든지 시스템구축완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고 더욱이 후술할 “지체상금”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경우 과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남는다. 이 모든 것이 법률적 분쟁을 촉발시킬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2.3.3 계약목적물의 문제

계약목적물, 다시 말하자면 용역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별지 등 첨부서류에 의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단 과업의 내용은 갑, 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이미

이러한 문구들은 재판관에게 재판규범으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계약서의 손질은 “법(또는 규범)을 창조”하는 작업인 것이다.

7) “각하”라는 소송법상의 의미는 소송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는 의미이다.

6) 많은 계약서가 쌍방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애매하고도 추상적인 문구로만 가득 채우고 있어서

지적인 바와 같이 SI 계약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계약초기부터 목적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일종의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나 가능하면 이러한 불확정적인 문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A와 B의 실무부서 사이의 “양해각서”의 성격을 띤 <합의서>를 따로이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계약서의 구성상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서의 항목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2.3.4 용역대가 지불의 시기와 방법의 문제

용역대가의 지불과 관련하여서는 선급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지어서 단계별로 B가 A에게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B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각 중도금, 잔금의 지급할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막연히 입금할 날짜만을 명시하였을 뿐 개발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A의 검수 완료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이를 보완토록하였으나 검수 등의 판단기준이나 그 판단주체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3.5 시스템 검수 및 인수의 문제

시스템의 검수에 관하여 위 계약서는 “A는 B로부터 H/W, S/W, N/W 의 공급 및 설치 또는 시스템 개발 및 설치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검사기간 종료일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 검사기간 만료일에 인수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검수기간이 너무 짧다. 종합시스템의 검수를 위하여는 고객이 전 시스템을 시험 작동하여야 하며, 나아가 B가 아닌 다른 전문가에게도 검수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이 너무 짧다.

둘째, 검사없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지나치게 B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급계약의 본질상 발주자가 수주자의 [일의 완성]을 검사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박탈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본질을 외면한 불공정 조항인 것이다.

2.3.6 유지보수의 문제

위 계약서에서는 B의 무상유지보수를 규정하였는데 일정한 경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예외의 경우는 대부분 B가 제공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예상하였다.

그러나 대상 시스템의 경우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느냐라는 판정의 기준과 주체가 모호하여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거나 유지보수의 책임을 B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7 계약해지의 문제

“A와 B는 본 계약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통지하고 동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본 논문의 계약의 해지란 2.2.1에서 논한 바와 같이 SI 계약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할 수밖에 없는 계약에서 기존의 효과는 유지하고 장래에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인데 정해진 시간에 답변이 없다고 하여 경솔하게 SI 계약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간단히 해지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법률적 분쟁을 촉발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옳고, 서면 답변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3.8 손해배상의 문제

계약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B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손해를 배상한다. 단, 본 B가 A에게 책임을 부담할 손해배상 총액은 시스템구축대가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A 또는 제3자에 대한 간접적, 파생적 또는 징벌적 손해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B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이다(민법 제104조). 즉,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라든가 간접손해의 면책 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규정을 무시할 것인데 그 이유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법원의 공적인 재판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B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귀책사유의 발생시 손해액을 명시하여 장차 있을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여 손해액의 입증 때문에 패소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소송의 진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게 하였다(민법 제398조).

3. 결 론

이상 SI 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SI 계약의 특수성을 살펴보았으며 실제의 계약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논자가 접해 본 외국(이스라엘)에서 요구한 SI S/W 공급계약서는 약 20쪽에 걸친 계약서로서 세세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작성된 것을 접해 본 사실이 있다. 이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SI 계약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다.

SI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의 SI 발주에 치중되어 있으나 요즘은 민간부문에서도 SI 발주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SI 계약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논자의 견해가 어찌면 독단으로 호른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바이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나 학계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을 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로 이 논문을 엮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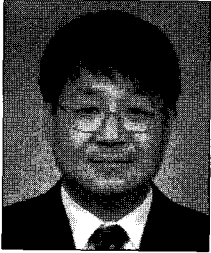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관련 기업에서는 SI 사업이 거대한 프로젝트인 데다 만큼 고객의 요구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 실무자가 관행대로 타 기업의 계약서를 참조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장시간에 걸쳐 협의하여 계약서를 손질하는 것이 절대 긴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하여 SI 계약이 추진되지 않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그 책임 추궁이 두려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도 얼마든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가와 기업의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전산원, 「SI 사업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1998. pp.7
- [2] 김현수, “SI 프로젝트 계약 및 수행 개선 이슈 분석”, 「한국SI학회지」, 제2권, 제1호(2003), pp. 37.
- [3]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pp.302.

◆ 저 자 소 개 ◆



계 경 문 (kmye@kookmin.ac.kr)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전파통신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이며 현재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정보법/통신법을 강의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등이다.